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46
----------	-------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 의 자 : 박상혁 · 김승원 · 한병도
진선미 · 이연희 · 한민수
김우영 · 강준현 · 허영
김준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되며 상조업의 성장으로 이 분야의 선수금 규모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음.

그런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 등으로 선수금이 사실상 사금고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및 처벌 방법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산건전성 저해 행위 금지 및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관리 및 연대책임, 실태조사·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명시해 상조업에 대한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선수금, 대규모 선불식 할부거래업장, 임원, 신용공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준법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관리인 도입을 의무화함(안 제27조의3 신설).
- 다. 상조가입 정보부터 피해구제 신청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27조의5 신설).
- 라. 해약환급금 지급 등과 관련 서류보존을 의무화하고 손해발생 및 부실초래 임원·지배주주의 연대책임 명시(안 제33조, 제33조의2 신설).
- 마.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보증, 지배주주 이익제공 등 자산건전성 저해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위한 탈법행위를 금지함(안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7까지 신설).
- 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감독 및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공동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제35조의2·제37조의2·제42조의2 신설).
- 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무의 일부를 시·도지사 혹은 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제5호의3·제7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선수금”이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을 말한다.

5의3. “대규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나.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선수금 합계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7의2.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사

나. 대표이사

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 감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10. “신용공여”란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의3을 제27조의4로 하고,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준법기준 및 준법관리인)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준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준법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관리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규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준법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제20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③ 준법관리인이 제20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준법기준 및 준법관리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선불식할부거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선불식할부거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할부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정보

2. 제36조에 따라 공개하는 부당행위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재화등에 대한 선택, 피해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할부거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기관·단체의 장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할부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제4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할부거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거래기록 등의 보존·열람)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 및 계약해제에 관한 기록 등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언제든지 소비자가 쉽게 해당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보존·열람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임원 등의 연대책임)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직무의 수행이 수인의 임원의 결의에 의한 것인 경우 해당 결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채무상 중대한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조사 및 감독”을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으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선수금 운용의 원칙)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선수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3(선수금 운용 관련 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2.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분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대출
3. 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에 따른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위한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은 제외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및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관하여는 제34조의4에 따른다.

제34조의4(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지배주주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또는 자본금의 변동, 지배주주등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지배주주등의 행위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은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지배주주등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함께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누구에게든지 제34조의4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신용공여에 관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배주주 등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그 지배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6(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5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7(경영건전성 기준)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2.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장을 제6장으로 한다.

제5장을 제7장으로 한다.

제3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35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 법”을 “이 법(제3장제3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의2부터 제37조, 제38조부터 제39조의2, 제41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한국소비자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다만, 할부거래와 관련된 규정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4장에 제35조의2 및 제3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실태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 또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감독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3장제3절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감독하고, 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그 지배주주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장제3절 또는 제3장제3절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2. 선수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그 지배주주등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과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업무 및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앞의 “제4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삭제한다.

제3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42조의2를 제42조의3으로 하고, 제5장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그 지배주주등이 제3장제3절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4.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임직원이 제3장제3절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또는 정직요구
3.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그 지배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

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2. 지배주주등이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

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④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 제목 “(사무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자 단체”를 “제27조의5 및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로 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의3.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3의4. 제34조의5의 금지행위를 한 자

3의5. 제34조의6을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제5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의3의 금지행위를 한 자

제5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의”를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하거나”로, “체결내용”을 “체결내용 및 계약해제에 관한 기록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1호 중 “체결내용을”을 “체결내용 및 계약해제에 관한 기록 등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제4항까지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7조의2·제42조의2에 따른 검사·조사·명령·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의2.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2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10의2. 제34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받지 아니한 자

10의3. 제34조의4제4항·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0의4. 제3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을 한 자

다만, 제1항2호의2, 제2항제10호의2·제10호의3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신 설>

8. · 9. (생 략)

<신 설>

<신 설>

7의2.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사

나. 대표이사

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 감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8. · 9. (현행과 같음)

10. “신용공여”란 금전 ·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 · 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의3(준법기준 및 준법관리인)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준

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준법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관리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규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준법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제20조제1호 각 목의 어느

제27조의3(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생
략)
<신 설>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③ 준법관리인이 제20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준법기준 및 준법관리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4(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현
행 제27조의3과 같음)

제27조의5(선불식할부거래정보시
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공
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
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
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정보
시스템(이하 “선불식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할
부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
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정보

2. 제36조에 따라 공개하는 부
당행위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서 소비자의 재화등에 대한
선택, 피해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할
부거래정보시스템의 구축·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기관·단체의 장 및 제27
조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에
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할
부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
체에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제45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3조(거래기록 등의 보존·열람)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 및 계약해제에 관한 기록 등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언제든지 소비자가 쉽게 해당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보존·열람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절 조사 및 감독

<신 설>

제33조의2(임원 등의 연대책임)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직무의 수행이 수인의 임원의 결의에 의한 것인 경우 해당 결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재무상 중대한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절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

제34조의2(선수금 운용의 원칙)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선수
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
수금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
리를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
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3(선수금 운용 관련 금
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는 선수금 운용과 관련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2.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분
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대
출

3. 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
공(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에
따른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
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

<신 설>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위한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은 제외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및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관하여는 제34조의4에 따른다.

제34조의4(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지배주주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또는 자본금의 변동, 지배주주등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
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
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
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
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
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
배주주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
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
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
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공정
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5(지배주주등의 행위 제

한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은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지배주주등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함께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누구에게든지 제34조의4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신용공여에 관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

<신 설>

<신 설>

으로 지배주주등 자신이나 제 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그 지배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6(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5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7(경영건전성 기준)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

<u><신 설></u>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공정 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법 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 사를 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 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	<u>래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u> 1. 지배주주등이 발행한 유가증 권의 신규 취득 금지 2.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 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u>제4장 조사 및 감독</u>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 ----- 시장·군수·구청장----- -----이 법(제3장제3 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 35조의2부터 제37조, 제38조부 터 제39조의2, 제41조에서 같 다)----- ----- ----- ----- 다만, 할 부거래와 관련된 규정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 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 -----제1항 본문----- -----
---	---

[illegible]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다만, 할부거래
와 관련된 규정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 · 특
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_____

한국소비자
 원 _____

비자원”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략)

<신설>

-----.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실태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 또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7조의2(감독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3장제3절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감독하고, 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그 지배주주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장제3절 또는 제3장제3절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2. 선수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선수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그 지배주주등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과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업무 및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4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신 설>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삭 제>

제42조의2(조치 등) ① 공정거래

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와 그 지배주주등이 제3장제3
절 또는 제37조의2 따른 명령
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4.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
발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임직원이 제3
장제3절 또는 제37조의2에 따
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
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또는

제4장 보칙
제42조의2(준용규정) (생략)

정직요구
3.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그 지배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2. 지배주주등이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④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2조의3(준용규정) (현행 제42조의2와 같음)

제46조(사무의 위탁) <신 설>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한 감독, 처리·보고, 조사·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

④ 제27조의5 및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

-----.

제7장 벌칙

제48조(벌칙) ① -----

-----.

하는 자가 해당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 · 5. (생략)

② (생략)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신설>

②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의3. 제3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3의4. 제34조의5의 금지행위를 한 자

3의5. 제34조의6을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34조의3의 금지행위를 한 자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신설>

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신설>

<신설>

10.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재화등의 거래 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제53조(과태료) ①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7조의2·제42조의2에

따른 검사·조사·명령·요구

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현행과 같음)

②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

여 준법기준을 마련하지 아니

한 자

9의3. 제27조의3제2항을 위반하

여 준법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10.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존하

거나-----

-----체결내용 및 계

약해제에 관한 기록 등-----

<u><신 설></u>	<u>10의2. 제34조의4제3항을 위반</u> <u>하여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u> <u>받지 아니한 자</u>
<u><신 설></u>	<u>10의3. 제34조의4제4항 · 제5항</u> <u>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u> <u>니한 자 또는 주요 내용을 누</u> <u>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u> <u>자</u>
<u><신 설></u>	<u>10의4. 제35조의2제3항을 위반</u> <u>하여 보고 또는 제출을 하지</u> <u>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u> <u>는 제출을 한 자</u>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 래기록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의 <u>체결내용을</u> 소비자 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 니한 자	11. ----- ----- ----- <u>체결내용 및 계약해제</u> <u>에 관한 기록 등을 보존하지</u> <u>아니하거나</u> -----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u>제3항까지</u> 및 제 <u>5항</u> 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	⑥ ----- <u>제4항까지</u> 및 제 <u>6항</u> -----

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단서 신설> ⑦·⑧ (생략)	----- -----. 다만, 제1항2호의2, 제2항제10 호의2·제10호의3에 따른 과태 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 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	--